##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민기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3007

발의연월일: 2020. 8. 18.

발 의 자:김민기·강병원·홍성국

강선우・양경숙・최종윤

정취숙 · 김정호 · 이재정

박 정ㆍ이원택ㆍ박성준

김남국 • 이수진 • 윤미향

의원(15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장기복무 장교, 준사관 및 장기복무 부사관과 단기복무 여 군에 대해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러나 임기제 공무원이 일반 공무원과 동일하게 육아휴직이 허용되고 있는 것과는 달리, 단기복무 장교와 단기복무 부사관은 자발적으로 복무연장 신청을 하여 복무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도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없어 장기복무 장교 등과 비교할 때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대해 '19년 11월 국민권익위원회는 「군인사법」개정을 통해 현역 군인들의 권익 침해를 방지할 것을 권고한 바 있음.

이에 단기복무 장교와 단기복무 부사관의 복무기간이 연장된 경우육아휴직이 가능하도록 하여 육아휴직 제도의 형평성을 확보하려는

것임(안 제7조제6항 신설 등).

법률 제 호

###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군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⑥ 제6조제4항 또는 제8항에 따라 전형을 거쳐 복무기간이 연장된 단기복무 장교 또는 단기복무 부사관은 그 연장된 복무기간을 의무 복무기간에 가산하여 복무한다.

제4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"여군이"를 "여군 및 제6조제4항 또는 제8항에 따라 전형을 거쳐 복무기간이 연장된 단기복무 장교 또는 단기복무 부사관이"로 한다.

#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의무복무기간에 관한 적용례) 제7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6조제4항 및 제8항에 따라 복무기간이 연장되는 단기복 무 장교 및 단기복무 부사관부터 적용한다.

제3조(육아휴직에 관한 적용례) 제4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제6조제4항 및 제8항에 따라 복무기간이 연장되는 단기복무 장

교 및 단기복무 부사관부터 적용한다.

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7조(의무복무기간) ① ~ ⑤	제7조(의무복무기간) ① ~ ⑤
(생 략)	(현행과 같음)
<u>&lt;신 설&gt;</u>	⑥ 제6조제4항 또는 제8항에
	따라 전형을 거쳐 복무기간이
	연장된 단기복무 장교 또는 단
	기복무 부사관은 그 연장된 복
	무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가산
	하여 복무한다.
제48조(휴직) ①・② (생 략)	제48조(휴직) ①・② (현행과 같
	승)
③ 임용권자는 장기복무 장교,	3
준사관 및 장기복무 부사관이	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	
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	
경우와 단기복무 중인 <u>여군이</u>	여군 및
제4호의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	제6조제4항 또는 제8항에 따라
경우에는 업무수행 및 인력 운	전형을 거쳐 복무기간이 연장된
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	단기복무 장교 또는 단기복무
위에서 휴직을 명할 수 있다.	부사관이
다만, 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로	
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대통	
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	
이 없으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	

다.	l
1. ~ 5. (생 략)	1. ~ 5. (현행과 같음)
④ ~ ⑧ (생 략)	④ ~ ⑧ (현행과 같음)